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5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유상범·장동혁·조배숙

주진우 • 박준태 • 박형수

진종오 · 조정훈 · 엄태영

송석준 • 곽규택 • 정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사자 간에 4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	第815條(婚姻의 無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			
에는 無效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	2. 당사자 간에 4촌 이내의 혈		
정을 위반한 때	<u> 족관계가 있는 때</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